

이용우 의원

23. 경찰, 군무원, 교정, 노동감독관 등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위험하거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적인 행정업무보다 강한 복무상 의무와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노동조합의 가입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들 특정직 공무원에게 헌법상 3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ILO의 규범에 타당합니까?

- ☐ 헌법 제33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헌법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교육 공무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특정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 교정, 노동감독관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
- ☐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사법질서, 국가기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단결권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이와 관련, ILO는 군대 및 경찰, 고위 관리직, 정책결정 및 고도의 기밀적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결권 보장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공공노동사관계과	담당자	5급 강재영	연락처	044-202-7698
------	----------	-----	--------	-----	--------------

이용우 의원

24.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나 소속만을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실제 직무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시 검토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검토하시겠습니까?

-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소방·교육공무원 및 일부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제한은 그 신분이나 소속이 아닌 사법 질서, 국가기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 것임
- ☐ 이러한 특정직 공무원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는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21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바 있으며,
 - 앞으로 특정직 공무원의 신분 및 업무의 특수성, 사회·문화적 상황,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공 공 노 사 관 계 과	담당자	5 급 강 재 영	연락처	044-202-7698
------	---------------	-----	-----------	-----	--------------

이용우 의원

25. 2021년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소방과 경찰·군무원을 달리 취급하는 합리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위험성,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 경사노위 논의 시 공익위원의 권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21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음

* 일본을 제외한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

□ 반면, 경찰의 경우 치안·질서유지 등 초고도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군무원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안전보장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군무원의 업무) 행정 지원, 군수 보급·관리, 통신·발전설비 유지·보수, 군사 장비 정비·점검, 진지·도로 등 구축·보수, 전산·통신 운영·관리, 보건·의무 등

담당부서	공 공 노 사 관 계 과	담당자	5 급 강 재 영	연락처	044-202-7698
------	---------------	-----	-----------	-----	--------------

이용우 의원

26. 우리나라가 2021년 비준한 ILO 제87호 협약 제9조는 결사의 자유 보장이 군대·경찰에 적용되는 '범위'를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입니다. ILO 편람 제345항도 '부여 의무는 없다'고 하나, 이는 배제를 '허용'할 뿐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 점을 인정합니까?

- ILO 제87호 협약 제9조는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사의자유위원회 판정해설집 345항*에서는 ‘협약상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여,

* (판정해설집 345항) 협약 제87호 제9조(1)항은 “동 협약상의 보장이 군인과 경찰에 적용되는 범위는 국내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ILO 총회는 군인과 경찰에게 동 협약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범위에 대해 각 국가에게 결정을 일임하고자했음이 분명하다. 이는 본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상기 범주의 사람에게 협약상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군대와 경찰에 대해서는 제87호 협약의 적용을 각 국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과	담당자	5급 강재영	연락처	044-202-7698
------	---------	-----	--------	-----	--------------

이용우 의원

27. ILO 편람 제347항은 '의심스러운 경우 노동자를 민간인으로 간주하라', 제344항은 '군대 예외를 제한적으로 정의하라'고 한다. 나아가 제348·350항은 군 민간직원의 단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군인이 아닌 군무원의 단결권을 '군대' 예외와 마찬가지로 전면 부정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 군무원은 군대 내 민간인 노동자가 아닌 특정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군인과의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국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특수성이 있음

* (군무원의 업무) 행정 지원, 군수 보급·관리, 통신·발전설비 유지·보수, 군사 장비 정비·점검, 진지·도로 등 구축·보수, 전산·통신 운영·관리, 보건·의무 등

- 이러한 이유로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등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음

* 「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군무원

*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 ☐ 이러한 군무원의 특수한 신분,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군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음

담당부서	공 공 노 사 관 계 과	담당자	5 급 강 재 영	연락처	044-202-7698
------	---------------	-----	-----------	-----	--------------

이용우 의원

28.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다수 선진국이 경찰의 단결권·교섭권을 보장합니다. 단결권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국제적으로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까?

- ☐ 해외 주요국의 사례 및 ILO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경찰에 대한 단결권 제한이 국제적으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영국, 일본 등은 경찰의 신분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 ILO 또한 경찰에 대해서는 제87호 협약의 적용을 각 국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아울러, 우리나라는 '19년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경찰의 단체(직장협회의) 설립 및 가입을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경찰직장협회의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

담당부서	공 공 노 사 관 계 과	담당자	5 급 강 재 영	연락처	044-202-7698
------	---------------	-----	-----------	-----	--------------

이용우 의원

29. 군무원에 해당하는 군의 민간직원도 프랑스·독일·미국·영국 등에서 단결권·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군무원의 단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국제 관행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군무원인사법」 등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등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고,

○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바,

* (군무원의 업무) 행정 지원, 군수 보급·관리, 통신·발전설비 유지·보수, 군사 장비 정비·점검, 진지·도로 등 구축·보수, 전산·통신 운영·관리, 보건·의무 등

○ 다른 나라의 군대 내 민간직원 또는 공무원과 그 신분·지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 ▲(미국) 연방공무원 신분, ▲(프랑스) 공무원, 민간인(계약직, 국가 소속 숙련공 또는 기능직), ▲(독일) 공무원, 민간직원, ▲(일본) 특별직 국가공무원

담당부서	공 공 노 사 관 계 과	담당자	5 급 강 재 영	연락처	044-202-7698
------	---------------	-----	-----------	-----	--------------

이용우 의원

30.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의 소관부처로서 국내법과 국제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군무원 전면 배제가 협약 및 감독기구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 경찰의 경우 ILO에서도 제87호 협약의 적용을 각 국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직장협회가 설립·운영 중으로 단체의 설립과 가능성이 가능함
- 군무원의 경우 국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그 신분 및 지위 등에 대해 특별법으로 군인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담당부서	공 공 노 사 관 계 과	담당자	5 급 강 재 영	연락처	044-202-7698
------	---------------	-----	-----------	-----	--------------

이용우 의원

31. 쟁의권 제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32. 관계부처(경찰청·국방부) 및 노정협의를 통해 공무원 노조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33. 국정감사 이후 실태조사, 법률검토, 관계부처 협의 일정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질의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경찰과 군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공익적 업무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 일반 공무원에 비해 신분·업무의 특수성, 사회·문화적 상황, 국민 정서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경찰과 군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될 경우 관계부처 등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음

*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경찰) 이개호의원안, 정혜경의원안, 신장식의의원안
▲(군무원) 정혜경의원안
▲(경찰공무원노조법 제정안) 신장식의의원안

담당부서	공 공 노 사 관 계 과	담당자	5 급 강 재 영	연락처	044-202-7698
------	---------------	-----	-----------	-----	--------------